

산업보건 관련 위원회의 공익위원 추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조수현

묵하 25년 전에 일어났던 1987년 KAL기 폭발사건이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라는 긴 이름을 가진 위원회의 과거 행적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 국정원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되었는데, 조사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는 민관 합동기구로 종교계, 법조계, 학계 등 분야별로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국정원의 신원조사 과정을 거쳐 선임된 민간위원 10명과 국정원 간부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추천 위촉된 민간위원 대부분이 재야운동 활동 경력이 있어서 인적 구성이 좌편향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한다. 종교계, 법조계 그리고 학계를 망라한 추천이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경외(?)”와 동시에 “의문”이 새삼스럽다.

크게는 정부, 작게는 조그만 학술단체에 이르기까지 정부 또는 단체의 의사 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각이 다를 수 있는 구성원 집단에서 위원들을 추천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원회의 심의 의결 대상이 되는 사안들 중에는 구성원들의 의견이 원천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들에 대한 전문

적 학식 내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공익위원 등의 이름으로 위원회에 전부 또는 일정 부분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안이다.

특히 사용자가 있고 피고용자(근로자)가 있는 산업장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는 여러 위원회 구성에 노사 당사자들의 참여와 함께 노사 또는 노사정에서 추천하는 공익위원들을 포함하여 구성된다면 노사정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고 되어 있다. 15명의 위원회 구성은 노사 추천 각각 5명과 고용노동부 차관과 고위공무원 1명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사회보험 또는 산재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등 5명이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명시되어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산업보건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나 산재예방과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의료가 관여되는 부분이 지대한 만큼 의료분야에서 참여하는 공익위원의 역할은 지대할 수 있다.

2008년에 발족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의 운영규정을 보더라도, 위원장은 판정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때에는 관련 단체로부터 적합한 자를 추천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규정 제21조, 판정위원회의 구성 등)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동수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각각 2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규정 제11조, 심의회의의 위원의 구성)는 규정도 있다.

이렇듯 업무상질병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히 직업환경의학과와 전문성이 심분 반영되어 있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이렇듯 심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어떻게 질판위에 참여할 수 있는가?

현행 규정대로라면, 질판위 위원장은 위원으로 적합한 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 대한병원협회 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학회, 대한산업보건협회, 그리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 -과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협의 대상인 관련 단체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의 단체인 직업환경의학회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 밖의 기관”에 들어 갈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모양새가 별로다.

본인이 현행 공익위원 추천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노사의 질판위 위원 추천 권한을 현행 1/6에서 1/3으로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이다.

질판위의 심의 결정에서 우리나라 현행 26개 전문 과목 중 특별히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참여가 특정되는 이유는 질병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데 있어서 직업환경의학 전문가로서의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의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전문가로서 참석하는 것이지 어느 측에 기울어진 의견을 개진하는 대변인으로 참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노사로 갈려서 추천을 받았다는 것으로 노사의 시각에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주장, 심의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다른 이유로, 노사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전문가 풀(pool)의 크기가 같지 않아 어느 한쪽에서는 약방의 감초처럼 다양한 위원회에 고만고만한 전문가가 항상(?) 위원으로 추천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한다면, 공익위원 추천에 직업환경의학회가 주축이 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학회는 학회 나름대로 분야별 전문가 확보와 질 제고에 대한 대외 신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